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7907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0735	송옥주의원	2024.6.20.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2206886	신성범의원	2024.12.24.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2.7.)
	2207887	윤준병의원	2025.2.4.	
	2211870	이병진의원	2025.7.31.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9.22.)
2212447	문금주의원	2025.8.27.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 소위 직접 회부(2025.11.5.)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3792	어기구의원	2025.10.29.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1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 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6.1.13.)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3.1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은 2009년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427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 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은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에 관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안 제37조제3항 신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 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을 “그 직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또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
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
 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
 니 된다.

<신 설>

-----그 직무상-----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
공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2.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라 이용, 처리, 제공되
는 정보
3. 「농지법」 제54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
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
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
하는 정보로서 제12조제1호
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
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
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등은 등록·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등록·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